

| | | |
|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 번호 | 788 | 【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검 토 보 고 |
|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· 제출자 : 2010. 11. 11(목) ·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0. 11. 17(수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0. 11. 22(월)

2. 제안이유

- 가. 약사동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을 위하여
- 나.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,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려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가. 사업개요

- 위 치 : 중구 약사동 590-13번지 일원
- 부지면적 : 1,343㎡
- 사업기간 : 2011. 1 ~ 2013. 12
- 규 모 : 지상4층, 건축연면적 1,760㎡(사무실, 회의실, 도서관등)
- 추정금액 : 3,100,000천원

나. 취득계획

○ 건물

(단위 : ㎡, 천원)

| 재 산 의 표 시 | | | | 추정금액 (천원) | 취득사유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|
| 소재지 | 대지면적 (㎡) | 건물연면적 (㎡) | 건축규모 | | |
| 약사동 590-13외 췌지 | 1,343 | 1,760 | 지상4층 | 3,100,000 | 약사동주민센터 |

○ 편입부지 매입현황

| 지 번 | 지목 | 면적(m) | 소유자 | 매 입 일 | 예산(천원) |
|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8필지 | | 1,343 | | | 809,680 |
| 약사동 590-13 | 대 | 403 | 중구 | 현청사 부지 | |
| 약사동 590-55 | 도 | 95 | 중구 | | |
| 약사동 590-5 | 전 | 173 | 현정순 | 2006. 11. 14 | 133,642 |
| 약사동 590-12 | 답 | 177 | 모민순 | 2007. 12. 31 | 165,052 |
| 약사동 590-57 | 도 | 241 | 울산광역시 | 2009. 1. 22 | 212,891 |
| 약사동 590-56 | 도 | 3 | 울산광역시 | | |
| 약사동 590-11 | 답 | 166 | 서화자 | 2008. 12. 22 | 201,110 |
| 약사동 590-40 | 답 | 85 | 모민순 | 2009. 4. 6 | 96,985 |

○ 취득사유

- 약사동주민센터 건물이 노후화되어 배관부식, 누수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, ※1979년 12월 건축(30년)
- 특히, 주차장이 없고 시설물이 협소하여 주민센터 이용 주민 불편가중

4. 근거법규

-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1항
-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제1항

5. 참고사항

- 2011년도 관리계획총괄표 1부
- 2011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1부
-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

6. 검토의견

가.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은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,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
- 약사동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려고 하는 것임.

나. 현재 약사동 주민센터는

- 주차공간이 없는데다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주민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함으로서
- 이의 신축은 해당洞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기도 함.

다. 이에 약사동주민센터 건립은

-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확충되어야 할 시설로 판단됨으로 특별한 이견(異見)이 없음.
- 다만, 우리구의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예산 확보가 우려됨. 향후 예산확보 방안 등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.

《 관련 법령 》

【지방자치법】

제39조 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- 1.~5 생략
- 6. 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**
- 7.~11 생략
-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】

제10조 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**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**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세워 그 **지방의회의 의결**을 받아야 한다. 관리계획을 **변경**할 때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0.2.4>

-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,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】

제7조 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 **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(생략)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[생략] 및 처분(생략)으로 한다.**

- 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.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[생략]개별공시지가[생략], **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**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**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**로 한다.

가. 취득의 경우 : **20억원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)** 나.생략

- 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

가. 취득의 경우: 1건당 **6천제곱미터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)**

- ④ **지방자치단체의 장은**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·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, **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·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.**

【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】

제11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**공유재산 관리계획은** 구청장이 다음연도 **예산편성전까지 구의회에 제출**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. 다만, 연도중에 **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.**

-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.

